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8.7.17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강동구 둔촌1동 170-1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8-15-2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<p>[심의 내용] 건축,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 건축 분야 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각각부에 고층 판상형 주동 집중 배치로 둔촌사거리 부분에서 위압감이 크므로 배치나 층수 등을 일부 조정하고 입면 특화 디자인 계획 등을 통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(권장). ○ 주동 입면 색채 계획을 단지의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색채 계획 등과 조화롭고 통일감있게 계획하기 바람. ○ 서측 공공보행통로 출입구 게이트는 대규모 단지의 공공적 커뮤니티 계획과는 맞지 않으므로 게이트 및 글자(로고)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브릿지의 기능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바람. ○ 보행 브릿지 연결을 위한 경사로는 남북측 보행을 단절시키므로 보행 약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고 위례초등학교 학생 등의 이용 동선 등도 고려하여 개선 바람. ○ 대지레벨 차이 극복을 위하여 계단 등 수직 동선계획과 함께 일부는 완충 공간으로써의 광장을 설치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개선 바람. ○ '심의 조치계획 2'에서 풍성로변의 주동 층수는 균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안과 비교하여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람. ○ 근린생활시설(5호선 상가) 입면 계획은 좀 더 분절하여 대규모 스케일을 축소하고 단조로움을 해소하도록 디자인 계획 바람. ○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각각부의 단지 진입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휴게공간 추가 설치 등 개선 바람. ○ 지하철 9호선(예정)역 주변은 공간 및 조경계획 등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8. 7. 1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18.7.17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강동구 둔촌1동 170-1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8-15-2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건축,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			
< 건축 분야 >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(계속)			
○ ‘심의 조치계획 4’에서 주차장의 주차집중여부 검토와 연결통로의 보행자 안전 조치 계획 등을 추가 바람.			
○ 주민운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 (4,651.58㎡), 작은도서관(1,448.68㎡), 경로당(1,285.05㎡)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하며,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% 완화 인정함.			
○ 「건축법」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인정함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			
○ 철근 배근 간격 D13@160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@150 등으로 검토 바람.			
○ 전이층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및 계획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○ 탑상형 주동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전 세대로 연결되는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 제연설계에 의한 연기 제어가 가능한 정형된 별도의 승강장 구조로 계획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			
○ 녹색건축 예비인증 접수 시점이 상당히 경과 되었으므로 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			
○ ‘심의 조치사항 34’ 조치계획에 저영향 개발기법(LID)의 지하에 빗물 침투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적용 바람.			
○ 전나무와 자작자무는 도시내 열섬 현상으로 생육이 어려우므로 수종 변경 바람.			
○ 지하주차장 토심 1.2m에 대하여 가로변 가로수와 대형수목 생육을 위하여 토심 1.5m로 확대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토심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(역보 등) 검토 바람.			
○ 암거 배수망과 관배수시설 설치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8. 7. 1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8.7.17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강동구 둔촌1동 170-1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8-15-2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건축,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			
〈 건축 분야 〉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			
○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램프에서 충분한 회전 반경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.			
〈 공통사항 〉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 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최우수(그린1)등급, 비주거(그린2)등급 적용 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1등급, 비주거 1등급 적용 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2%, 비부거 7% 적용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8. 7. 1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